



양육비 안주는 부모, 신상공개 허용되나 -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425 판결

장윤미 법무법인 원앤원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올해 초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던 무죄 판결이 하나 있었다. 이른바 ‘배드파더스’ 판결.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현재도 운영 중이며 5월 29일 기준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父) 243명, 모(母) 36명의 사진, 거주지, 학력, 직장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¹⁾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2018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신상이 공개되었던 부모 5명(남성 3명, 여성 2명)은 위 사이트 관계자 구 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모아(9명 중 7명 기소 의견) 구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일반 명예훼손 사건과 다르다고 판단한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였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결과 배심원 7명 전원이 구 씨에 대해 무죄 평결을 하였다. 배심원단의 평결

1) 배드파더스 사이트 URL: <https://badfather540837381.wordpress.com/blog/>

결과가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1심 재판부도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해 사건은 현재 수원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상황이다(수원고등법원 2020노70).²⁾

아직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배드파더스 1심 판결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어 짚어볼 만하다. 사실 1심 판결 전 여성계와 일부 법조계에서 구 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결과를 비판하는 견해가 적지 않았다. 구 씨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측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배드파더스 운영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전달해 인터넷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러한 행위가 일응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커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양육비 지급 문제를 단순히 한 개인이나 가정 차원의 문제가 아닌 아동 생계와 직결된 공공의 문제로 바라보고 신상 공개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해 양육비 문제에 있어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하 구체적으로 해당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다.

2. 대상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425 판결

가. 쟁점 – ‘비방의 목적’의 존재 여부

구 씨에게 적용된 법조항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으로,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②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③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 또는 모의 사진, 거주지, 학력, 직장 등 신상정보를 양육비 미지급 사실과 함께 누구나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구 씨에게 고소인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로 귀결되었다.

판례는 ‘비방할 목적’과 관련하여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가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할 목적’이 부인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판례는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며, 그 범위를 다소 넓게 보고 있다. 또 적시

2) 강영훈 (2020, 1, 15).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중첩). <연합뉴스>. URL: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5002151061>

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①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이나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②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③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협을 자초한 것인지, ④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30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판시에 따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보면, 인터넷신문사가 한 시의원이 시청 공무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며 질책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경우(2006. 10. 13. 선고 2005도3112 판결), 고등학교 교사가 피해자가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여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의 부당함을 알리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 게시한 경우(2006. 10. 26. 선고 2004도5288 판결) 등이 있다.

나. 1심 판결의 요지 및 판단 근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 또는 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미지급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 즉 사적 영역의 문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공공의 문제로 볼 것인지,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된 부모 5명은 공인(公人)이 아닌 사인(私人)들이었는데 이들에 대한 신상 공개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1심 법원은 배드파더스 사건에서 구 씨에게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①‘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설립된 사이트로 2018년 7월경 생긴 이후 계속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②구 씨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등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③배드파더스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를 비하하거나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등의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④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⑤양육비 채무의 불이행은 결국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 금전채무 불이행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⑥고소인들 스스로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협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 ⑦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이를 알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고통 받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양육비 지



급을 촉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사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나 동기가 부수적으로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판결의 의미 및 검토

가.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아동의 생존권 및 한 가정의 존립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 판단해 양육비 지급이 공공의 문제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양육비는 한정적으로만 보면 사인 간의 채권·채무 문제일 수 있지만, 아동의 생계 및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면 단순히 사인 간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판결은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양육비 채권을 통상적인 금전채권과 동일선상에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배드파트스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고, 영리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신상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절대다수인 78.8%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³⁾ 양육비를 주는 부모보다 안 주는 부모가 훨씬 많은 것은 양육비 이행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제도적 미비에서 기인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현실 인식 위에서 양육비는 다수의 관심 대상이고, 신상 공개는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위 판결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를 비하하거나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본 하나의 근거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구 씨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이름과 사진을 게시하면서 “아주 재밌는 일들을 시작해보자ㅋㅋㅋ #신나는#재밌는#즐거운#기쁨#복수#추심#양육비#돈#재테크”라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선 “고소인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취지의 표현이 사용되었고 주된 목적이 고소인 개인의 인격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데 있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두 사례를 비교해 보는 것은 ‘비방의 목적’을 판단하는 데 참조가 될 만한 것이다.

3)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보고서. URL: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815



Bad Fathers

-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입니다 -

출처: 배드파더스 사이트

나. 입법적 보완의 필요

이번 판결이 여러모로 의미가 깊지만 결국 양육비 문제는 입법적으로 보완될 사안이다. 당초부터 법이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명단공개를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해 두었다면 ‘배드파더스’ 건은 재판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최근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 입법적 진전이 있었는데 국회는 5월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명단공개나 출입국불허 등 강력한 규제책 마련에 대한 논의는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논의만 계속되고 있다. 결국,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는 선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나 출입국불허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